



# 새수영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## 수영구보

호외 제704호 2023. 4. 21.(금)

### 고시

- 도로명주소 고시-----1
-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-----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-28호

# 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21일  
수영구청장

### ○ 도로명주소 : 수영로451번길 20-5등 2건

#### ▷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지 참조(1건)					

#### ▷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종전주소 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	비고 (지번주소)
별지 참조(1건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610-4761)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(www.suyeong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4. 2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■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[별지 제8호서식]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-29호

##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21일

###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1. 책임수행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
2.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: 광안2지구
3. 사업위치 및 면적 : 광안동 319-6 및 남천동 34-2 일원 (175필지, 104,806.5㎡)
4. 위탁 업무 :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
5. 기타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610-47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